



서울고등법원

제 8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0누34639 여권상영문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외교통상부장관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611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15.
판 결 선 고 2011.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피고에게 최초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영문성명을 "B"으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 12. 18. 원고의 신청대로 영문성명이 표기된 유효기간 5년의 일반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발급받은 위 여권의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09. 6. 26. 피고에게 다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인 "B"을 "C"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6.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원고의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이 한글이름 "A"과 유사한 발음 표기에 해당되고 해외출입국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영문성명의 표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여권발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원고의 여권재발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 발급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아니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초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09. 6. 26. 피고에게 다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의 표기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신청에 따른 여권발급을 거부하였는바, 피고가 한 처분의 실질은 원고의 영문성명을 변경한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투는 것인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한글성명인 “B”이 기존 여권상 “B”으로 영문표기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B”을 “C”으로 발음하고 있는 등 한글성명 “B”과 영문성명 “B”은 명백히 다른 음역에 있다. 또한 원고는 여권상 영문성명의 발음이 한글성명과 달라 해외여행시 많은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서 앞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감추려 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초 발급된 여권상 영문성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여권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여권발급이 여권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재발



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를 여권의 효력 상실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제1항 각호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 자체의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5조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유효한 여권에 있는 정보 내지 기재사항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이미 무효로 된 기존의 여권과 달리 여권상의 정보나 기재사항을 정정·변경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여권의 재발급과 관련하여 각종 엄격한 제한(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1조 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미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유효한 여권을 중복 발급받음으로써 신원확인에 혼선이 생기고 기존 여권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 위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재발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법시행령 제1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1조의 여권의 재발급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이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여권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발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기존의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달리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19조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 (1) 다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기존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달리 신청한 경우에 피고가 변경을 구하는 영문성명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그 변경된 영문성명으로 된 새로운 여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과 동시에 그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출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공문서로서, 우리나라 여권 상에 표기된 영문성명은 여권상의 생년월일과 더불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출입국심사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출입을 함에 있어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② 여권발급실무상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법 제11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와 같이 여권번호와 유효기간 등은 기존 여권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부여받고 있는 점, 여권의 기간 만료일 전에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료일을 연장하는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중 기간만료일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여권의 재발급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존 여권의 기간만료일 이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차이를 둘 필요는 없는 점에 비추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다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여권의 신규발급신청에 관한 법 제9조보다는 여권재발급에 관한 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유효한 여권의 영문성명의 변경을 외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강제퇴거된 자의 재입국 차단, 국내외 범법자와 비자발급거부자의 해외도피방지, 우리나라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의 차원에서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여권의 유효기간 도과 후에 다시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영문성명의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④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나(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새로 발급 신청하면서 영문성명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영문성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여권발급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여권발급 실무상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법 제 11조에 의한 여권의 재발급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새로 발급신청하는 경우까지 재발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종전 여권의 영문성명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여권발급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⑥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기존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달리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유효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변경신청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등으로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 받으면서 영문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과는 구별하여 취급해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기존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의 발급 신청시에 기존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달리 신청을 받은 피고가 변경된 영문성명으로 된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 줄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권상 영문성명이 각국의 출입국심사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가지는 기능과 효용,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 추락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될 일반 국민들의 불편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영문성명의 변경을 신청한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필요성, 변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기존의 영문성명의 변경을 구하며 이 사건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된 것은 원고의 기존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보고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이름과 달리 발음하여 원고 개인적으로 의사소통상의 혼란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법행위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외국의 입국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회피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1996. 5. 11. 출생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13살의 어린 학생으로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의 사용을 강요할 경우 앞으로 계속하여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원고가 기존 여권으로 해외를 출입한 적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나이, 영문성명 변경 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여권상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원고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영문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기초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결론에 있어 이와 동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4-18

재판장 판사 성낙송 _____

 판사 박범석 _____

 판사 김강대 _____



관련 법령

■ 여권법(2009.10.19, 법률 제9799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3. 여권의 명의인의 지문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제15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여권의 재발급) ①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사유서
3.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5.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19조(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그 여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가 있거나 여권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제18조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

제21조(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여권 재발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여권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외관상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끝.